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【상호】

본 회사는 주식회사 포스코엠텍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POSCO M-TECH CO.,LTD.로 표기한다.

제 2 조【목적】

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 각종 포장자재의 생산 및 판매
2. 철강제품의 포장작업에 관한 사업
3. 비철금속, 합금철 제조 및 판매, 도매업
4. 철강제품의 가공 및 판매, 도매업
5.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 조에 정한 업무
6. 산업용 기계설비의 제작 및 부품의 가공판매
7. 수출입업
8. 부동산 임대업
9. 전문건설업 및 전기공사업에 관한 사업
10. 광물의 가공, 판매 및 자원개발 사업
11.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
12.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
13.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
14. 도금업
15.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

제 3 조【본점 소재지】

- ① 본 회사의 본점은 경상북도 포항시에 둔다.
-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·외 지점, 공장, 출장소, 사무소, 영업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.

제 4 조【회사의 존립기간】

2001.3.21 삭제

제 5 조【공고방법】

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www.poscomtech.com)에 한다.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.

제 2 장 주식과 주권

제 6 조【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】

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7 천만주로 한다.

제 7 조【1 주의 금액】

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 1 주의 금액은 500 원으로 한다.

제 8 조[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]

본 회사는 설립 시에 30,000 주의를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.

제 9 조[주식의 종류]

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.

제 9 조의 2[주식 등의 전자등록]

본 회사는 『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』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.

제 10 조[신주인수권]

-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-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 본 항에 따라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본 회사는 신주의 종류와 수,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, 신주의 인수방법 등 상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배정한 신주의 납입 기일의 2 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.
 1.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2.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3.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4.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우선 발행할 수 있다.
 5.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발, 생산·판매·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6.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(DR)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- ③ 제 2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
-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
제 11 조[신주의 배당기산일]

회사가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한 것으로 본다.

제 12 조[주식의 소각]

-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.
-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.

제 13 조【명의개서대리인】

-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
-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.
- ③ 본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사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 14 조【명의개서 등】

- ① 본 회사 주식의 전자등록, 주주명부의 관리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.
- ② 제 1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.

제 15 조<삭제>

제 16 조<삭제>

제 17 조<삭제>

제 18 조【주주명부의 폐쇄】

- ① 본 회사는 매년 1 월 1일부터 1 월 31 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.
- ②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 주간 전에 공고한 후 3 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.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.

제 3 장 사채

제19조【사채의 발행】

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제19조의 1 【전환사채의 발행】

-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가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 1.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 2. 경영상 필요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 3.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발, 생산, 판매,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-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전환가액은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.
-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2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9조의 2 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】

-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 1.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 2. 경영상 필요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 3.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발, 생산, 판매,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-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.
-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, 발행가액은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.
-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2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⑤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4 장 주 주 총 회

제 20 조【총회의 소집】

- ①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 및 그 밖의 법규에 정한 바에 의하여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.
- ②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 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.
- ③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, 필요에 따라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.
- ④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
- ⑤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정관 제 33 조의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21 조【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】

-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,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과 경상북도 포항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,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
- ③ 회사가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정하여진 사항을 통지, 공고, 비치하여야 한다.

제 22 조【총회의 의장】

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.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 시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23 조【의장의 질서 유지권】

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,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,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 24 조 [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]

-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- ② 의장은 주주로서 자기의 의결권을 행사한다.

제 25 조 [의결권의 대리행사]

-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② 대리인은 본 회사의 주주에 한하며 대리인은 총회개회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법인인 주주는 소속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제 26 조 [의사록 작성]

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존한다.

제 5 장 이사 및 이사회

제27조 [이사의 수]

본 회사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둔다.

제28조 [이사의 선임]

-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상법 제382조의 2규정의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는다.

제29조 [사외이사의 자격]

사외이사는 산업계, 금융계, 학계, 법조계, 회계분야 또는 공공부문에서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고, 관련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.

제30조 [이사의 임기]

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.

제31조 [이사의 보선]

- ① 이사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한다. 그러나 법정원수에 달하고 업무 집행상 지장이 없는 때에는 보결선임을 유보 또는 차 회 정기 주주총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.
- ② 사외이사의 사임,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 수가 법률이 요구하는 수를 미달하게 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

제32조 [대표이사 등의 선임]

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내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, 대표이사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써 사내이사에게 사장, 부사장,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의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.

제33조 [이사의 직무]

-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,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,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4조【이사의 의무】

-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5조【이사의 보수】

- ① 이사의 보수의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정하고, 세부 운영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- ② 사내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및 감사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.
- ③ 사외이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36조【비등기임원】

-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정사항 및 경영상 중요사항의 집행을 위하여 비등기임원을 둘 수 있다.
- ② 비등기임원은 대표이사가 임명한다. 다만, 이사회가 정하는 주요 직책에 비등기임원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비등기임원은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로 구분하며, 그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및 감사 퇴직금지급 규정의 사장,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준한다.
- ④ 비등기임원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정한다.
- ⑤ 비등기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제30조의 조항을 준용할 수 있다.

제37조【이사의 보상 및 책임 감경】

본 회사는 이사가 본 회사의 자격으로 어떠한 소송, 제소, 변론의 당사자가 되어 본 회사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, 손실 및 채무에 대하여 상법규정의 범위 내에서 본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. 다만,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38조【권한】

이사회는 법령과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본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가 의안으로 제출한 사항을 결의한다.

제39조【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】

-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.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대표이사 외의 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도 대표이사는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일 전일까지 모든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40조【의장】

- ①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.
- ②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제33조 2항 순으로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1조【이사회의 정족수와 결의방법】

-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 및 감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42조【의사록】

이사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43조【고문 및 촉탁】

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의 명으로 임원대우의 고문과 촉탁을 둘 수 있다.

제 6 장 감 사

제 44 조【감사】

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. 그 중 1명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.

제 45 조【감사의 선임】

-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 하되,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정한다. 다만, 상법 제 368조의 4 제 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
- ③ 감사의 선임은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 46 조【감사의 임기】

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일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한다.

제 47 조【감사의 보선】

감사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 정관 제 44조에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48 조【감사의 직무와 의무】

- ①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,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.
-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
-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제 3 항에 따른 청구를 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이사회가 소집되지 아니하면 감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⑤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 34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49 조[감사록]

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,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50 조[감사의 보수와 퇴직금]

- ① 감사의 보수의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정하고, 지급액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.
- ②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및 감사 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.

제 7 장 계 산

제 51 조[사업년도]

본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 월 1 일로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하여 연도 말에 결산한다.

제 52 조[재무제표 등의 작성]

- ① 대표이사는 매 결산기에 다음 각 호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- 1. 재무상태표
 - 2. 손익계산서
 - 3. 대통령령으로 정한 서류로서 이사회가 결정하는 서류
 - 4. 연결재무제표
-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제 1 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감사는 제 1 항의 서류를 받은 후 정기주주총회일 1 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점에 5 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.
- ⑤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,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⑥ 대표이사는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무상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53 조[외부감사인의 선임]

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『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』의 규정에 의해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하여야 하고,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54 조[잉여금의 처분]

본 회사의 잉여금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.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 이외에도 처분할 수 있다.

1. 이익준비금 : 매 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금의 1/10 이상
2. 기타의 법정적립금
3. 주주배당금
4. 임원 퇴직공로금
5. 기타이익잉여금 처분액
6. 차기이월이익잉여금

제 55 조[이익배당]

- ① 이익배당은 금전, 주식 또는 그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
- ② 제 1 항의 배당은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일 또는 중간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 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. 회사가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- ③ 전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,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.

제 56 조[중간 배당]

회사는 연 1 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, 주식 또는 그 외의 재산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.